



- 2004년도 정부포상 및 장관·도지사포상업무지침 7페이지 국민포상대상  
에 각 분야에서 국가발전에 뚜렷한 공로가 있는자로서 사망자를 포함한다  
라는 규정이 있고, 동지침 17페이지에 천재지변, 화재진압 등 위급한 상황  
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희생하여 사  
회 전체의 귀감이 되는자, 생전에 정치·경제·사회·문화·교육·학술 발  
전 등에 큰 공을 세워 국민적 존경과 덕망을 겸비한 지도적 인사 등을 대  
상으로 추서 규정이 있는 점을 미루어볼때, 사망자의 공적도 포상대상에  
포함하여 제3자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수여할 수 있도록  
관련조례를 현실에 맞게 보완하여 개정코자 함은 타당할 것이라 하였음.

## 5. 질의 및 답변

- 문 : 고성군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 내용이 고성군민상도 적용이 되는지?
- 답 : 고성군민상은 별도 조례가 있으므로 관련 조례에서 규정한대로  
적용됨.

## 6. 토 론 : 없음

## 7. 심사결과

- 2004. 3. 18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